

[변경대비표]

1. 펀드명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2. 작성기준일 : 2024.08.01

3. 정정사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개정. (2024.08.01 시행)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모형사용))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2024.01.25 시행)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4.03.01 시행)

4. 효력발생일 : 2024.08.20

<신탁계약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 15 호> 개정 (2024.08.01 시행)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각 호와 같다.</p> <p>8. 종류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u></p> <p>13.종류 S-P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u>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p> <p>16.종류 S-P2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u>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각 호와 같다.</p> <p>8. 종류 S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u></p> <p>13. 종류 S-P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로서</u>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p> <p>16.종류 S-P2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로서</u>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p>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변경		집합투자업자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집합투자업자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일괄신고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p>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01.25)</p> <p>문구 보완</p>	<p>6. 집합투자증권은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u>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p> <p>11. 집합투자업자는 <추가>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u>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u> --- 있습니다.</p>	<p>6. 집합투자증권은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삭제> <u>보호되지</u> 아니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삭제>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p> <p>11. 집합투자업자는 <u>이 투자신탁의 모두자 신탁이</u>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을 <u>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u> --- 있습니다.</p>
요약정보			
투자 위험등급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2024.01.25)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이며, ---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삭제>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 -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용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및 연평균수익률 주석추가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투자자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01.25)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으로 ---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삭제>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 --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원본손실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01.25)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며, 특히 -- --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삭제> <u>보호되지</u> 아니며, 특히 ---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삭제> <u>보호되지</u>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판매경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 15 호> 개정. (2024.08.01 시행)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u>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제공됩니다.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u>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제공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주소지변경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19층 (우 07325)</u>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16층 (우 07321)</u>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 15 호> 개정. (2024.08.01 시행)	<p>[종류형 구조]</p> <p>- 판매경로: 온라인 슈퍼(S)</p> <p>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종류형 구조]</p> <p>- 판매경로: 온라인 슈퍼(S)</p> <p>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 제공되지 않습니다.</p>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01.25)	<p>이 투자신탁은 ---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p> <p>가. 일반위험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p> <p>가. 일반위험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삭제>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삭제>보호되지 않습니다.</p>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문구보완	소규모펀드의 타펀드 자동전환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추가>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 바랍니다.	소규모펀드의 타펀드 자동전환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사용))	<p>이 투자신탁은 --- 산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은 18.03%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업데이트</p> <p><변경전 1> ■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p>	<p>이 투자신탁은 ---산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은 35.72%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1)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p> <table border="1" data-bbox="991 1223 1485 1491"> <thead> <tr> <th>변경일</th> <th>위험등급</th> <th>변경사유</th> </tr> </thead> <tbody> <tr> <td>2024.08.20</td> <td>2등급</td> <td>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u>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u>)</td> </tr> </tbody> </table> <p><변경후 1> (2) 수익률 변동성 기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p>	변경일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4.08.20	2등급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u>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u>)
변경일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4.08.20	2등급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u>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u>)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 15 호> 개정. (2024.08.01 시행)	<p>(2) 가입자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부과)</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p>	<p>(2) 가입자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후취판매수수료 부과)</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P2)</p> <p>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P2)</p> <p>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p>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p>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4.03.01 시행)</p>	<p><신설></p>	<p>10)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중도환매 불가</td>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td>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중도환매 허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환매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	<p>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 15 호> 개정. (2024.08.01 시행)</p>	<p>(2) 가입자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부과)</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P2)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p>	<p>(2) 가입자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후취판매수수료 부과)</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P2)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p>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p>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 제 9 호 개정</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소득 분리과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3. 1 호 및 2 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p> <p>(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p> <p>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 결정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연금소득 분리과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3. 1 호 및 2 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p> <p>(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p> <p>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 결정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p>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주소지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19층 (우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16층 (우 07321)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변경전 1> ■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위험등급	분류기준	표준편차
1	매우 높은 위험	25% 초과
2	높은 위험	15% 초과 25% 이하
3	다소 높은 위험	10% 초과 15% 이하
4	보통 위험	5% 초과 10% 이하
5	낮은 위험	0.5% 초과 5% 이하
6	매우 낮은 위험	0.5% 이하

1. “수익률 변동성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후 1> (2) 수익률 변동성 기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위험등급	분류기준	97.5% VaR
1	매우 높은 위험	50% 초과
2	높은 위험	50% 이하
3	다소 높은 위험	30% 이하
4	보통 위험	20%이하
5	낮은 위험	10% 이하
6	매우 낮은 위험	1% 이하

1) “수익률 변동성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 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97.5% VaR”는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하며,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신뢰구간 97.5%)을 의미합니다.

